

## ■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-30호

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22일

금융위원회

### 1. 개정이유

저축은행의 해산·합병 등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,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(‘21.7.27. 시행)되어 감독규정의 해산·합병 심사기준 등이 시행령으로 이동함에 따라, 기타 감독규정상 조문을 정비하고,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사유를 추가하기 위함

### 2. 주요 내용

#### 가. 합병·전환 등 인가 심사기준 정비(안 제15조, 제16조)

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합병·전환 등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감독규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함

#### 나.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정비(안 제19조)

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개정사항 중 금융위에 대한 신고가 면제되는 사유를 추가 규정\*함

\*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보완권고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등

### 3. 세부 개정 내용

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) 정보마당의 ‘법령정보(고시/공고/훈령)’을 참조